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소라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988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이소라,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성준, 김원태,
김태수, 민병주, 박강산,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서상열, 송도호,
오금란, 왕정순, 유만희,
윤영희, 이민옥, 이병도,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전병주,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한 신, 황유정
의원(30명)

1. 제안이유

- 거주 공간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에어컨 실외기, 고성방가 등)이 지속적으로 시민 불편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법령이미비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개인 유발 생활소음 및 진동을 정의하고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민 간 갈등 예방 및 주거환경 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방안을 신설함(안 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음·진동관리법」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의 관리) ① 시장은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또는 기계·기구·시설(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그 밖에 물체의 작동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 환경에 피해를 주는 소음(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관리기준·방안, 측정방법, 관련 민원대응 및 분쟁해결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에 대한 민원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서 제작, 예방 교육·홍보, 캠페인,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5조(개인 유발 생활소음 · 진동의 관리) ① 시장은 주거공간에서 개인의 직접적인 행위(악기 연주, 고성방가 등) 또는 기계 · 기구 · 시설(에어컨 실외기, 세탁기 등) 그 밖에 물체의 작동으로 인하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소음(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층간소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개인 유발 생활소음 · 진동”이라 한다)을 관리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u> <u>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 유발 생활소음 · 진동에 대한 관리기준 · 방안, 측정방법, 관련 민원대응 및 분쟁해결 지침 등을 마련할 수 있으며, 제도의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세부</u>

<u>제15조</u> ~ <u>제17조</u> (생략)	<u>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u> <u>③ 시장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u> <u>· 진동에 대한 민원 이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시책의 수립 및 집행에 활용할 수 있다.</u> <u>④ 시장은 개인 유발 생활소음</u> <u>· 진동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서 제작, 예방 교육·홍보, 캠페인, 관련 전문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실시할 수 있다.</u> <u>제16조</u> ~ <u>제18조</u>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소음진동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연번	조·항		추계대상 여부	판단 내용
1	제15조 (개인 유발 생활소음 진동의 관리)	제1항~ 제3항	○	· 개인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지침서 제작, 실태조사 포함) 연구용역 위탁을 전제로 비용 발생
		제4항	○	· 유사사례 참조하여 홍보물(포스터, 영상) 제작을 전제로 비용 발생

2. 비용추계의 전제

가. 대상

-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연구용역(안 제5조제1항~제3항)
-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안 제5조제4항)

나. 전제

- 연구용역은 추계 기간 중 첫 해에 한해 연구용역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를 추계함
※ 용역기간: 3개월, 인력구성: 책임연구원(1명) 연구원(2명), 연구보조원(2명)
- 물가상승률 미반영

다. 추계기간 : 시행일로부터 5년(2026년~2030년)

라. 방 법

- 서울시 유사사례(주택실 공동주택과) 참조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비용 ≍ 191,470천원(연평균 38,294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시책 수립 연구용역	41,470	-	-	-	-	41,470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홍보물 제작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소계	71,470	30,000	30,000	30,000	30,000	191,470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이설화

☎ 02-2180-7952

e-mail : sseol789@seoul.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및 피해 예방 시책 수립 연구용역 비용 : 총 41,470천원

- 산 식 : 인건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수월액합)x용역개월수+운영비(제본비, 기타 일반운영비)

= 13,190천원 x 3개월 + 1,900천원

- 산출근거 : 서울시 계약심사 매뉴얼(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서 기준)

➢ 인건비 : 책임연구원 보수월액(3,706천원)+연구원 보수월액(2,842천원)+연구보조원 보수월액(1,900천원)

➢ 운영비 : 제본비(10천원 x 100부), 기타 운영비(300천원 x 3개월)

○ 개인 유발 생활소음·진동 관리 및 피해 예방 홍보물 제작 : 총 30,000천원

- 산 식 : 홍보 포스터 제작비 + 홍보 영상 제작비

= 10,000천원 (10천원 x 1,000부) + 20,000천원(1식)

- 산출근거 : 주택실 공동주택과 2025년 사업예산내역 참조(층간소음예방 및 관리지원)

[붙임] 주택실 공동주택과 '충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예산내역

충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1 기본 현황

☐ 사업개요

회 계	일반회계
사업기간	☒ 연례반복
사업내용	○ 충간소음 예방 및 관리 지원 - 충간소음 민원의 기술적 자문, 민원현장의 민원 청취 및 조사 - 충간소음 자율조정기구 구성 및 운영기법 자문, 충간소음 예방교육
사업비 (당해년도)	101,120천원 (국비) (시비)101,120천원 기타 (예산 외) (구비) (기타)

☐ 사업 담당자

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
주택실	공동주택과	이정식 2133-7130	문상만 2133-7290	김한형 2133-7294

※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예산 설명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

구 분	2024예산액 (A)	2025예산액 (B)	증감 (B-A)	(B-A)*100/A
계	(x-) 66,200	(x-) 101,120	(x-) 34,920	(x-) 53
사무관리비	(x-) 61,200	(x-) 41,000	(x-) △20,200	(x-) △33
재료비	(x-) 5,000	(x-) 5,000	(x-) 0	(x-) 0
기타보상금	(x-) 0	(x-) 55,120	(x-) 55,120	(x-) 100

☐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5년 예산내역		
사무관리비	○ 층간소음 예방 홍보물 제작 · 배부	=	30,000천원
	- 층간소음 홍보 포스터 10,000,000원	=	10,000천원
	- 층간소음 홍보 영상 20,000,000원	=	20,000천원
	○ 층간소음 상담실 사무용품비 1,000,000원	=	1,000천원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컨설팅 100,000원×100개단지×1명	=	10,000천원
재료비	○ 층간소음 측정기 유지관리	=	5,000천원
	-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50개소 마이크로폰 1,000,000원*5대	=	5,000천원
기타보상금	○ 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전화 및 현장 방문상담	=	55,120천원
	- 전화상담 33,000,000원	=	33,000천원
	- 현장 방문상담 22,120,000원	=	22,120천원

3 사업 설명

□ 사업목적

-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상존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분쟁에 대한 다각적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주민 자율적으로 층간소음 분쟁 해결 의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지원하여 층간소음의 자율적 해결 분위기 확산 도모

□ 사업근거

- 법령상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 기타 근거(조례 등)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층간소음 갈등해결지원단)
 - 서울특별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홍보)

□ 사업내용

○ 층간소음 제작 및 배부 : 포스터 및 영상 제작(6월 기준)

□ 향후 기대효과

- 층간소음 문제에 대하여 이웃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상호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형성
- 입주민 스스로 적극적인 토론과 합의를 통해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을 만들고 주민자치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 조성

5 최근 3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1	(x-) 140,259	(x-) 0	(x-) 0	(x-) 140,259	(x-) 108,410	(x-) 0	(x-) 31,849
2022	(x-) 99,984	(x-) 0	(x-) 0	(x-) 99,984	(x-) 66,000	(x-) 21,340	(x-) 12,644
2023	(x-) 121,600	(x-) 21,340	(x-) △6,000	(x-) 136,940	(x-) 107,502	(x-) 0	(x-) 29,438